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4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2. 7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지원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,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,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,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제1장 총칙’을 삭제
- 나. 제1조(목적)에 제20조를 삭제
- 다. 제2조(정의)에 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를 추가
- 라. 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을 제3조(군수의 책무)로 변경
- 마. ‘제2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’을 삭제
- 바. 제4조(지원대상) 내용을 모두 삭제
 - 제4조(지원사업)으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,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,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,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
- 사. 제5조(지원기준) 내용을 모두 삭제
 - 제5조(아이돌보미 처우개선)으로 변경하고,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
- 아. 제6조(서비스 제공기관) 내용을 모두 삭제
 - 제6조(위임·위탁)으로 변경하고,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일부를 기관·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

자. 제7조(지원신청 및 지급), 제8조(지원 중지), 제9조(환수 조치) 내용을 모두 삭제
차. ‘제3장 지도 및 감독 등’을 삭제

카. 제10조(지도·감독)를 제7조(지도·감독)로, 제11조(준용)를 제8조(준용
등)로 변경 후 제8조(준용 등)에 보조금법을 추가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연간 약 100백만 원 정도 소요 예정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23. 1. 11. ~ 1. 31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서비스제공기관”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5. “아이돌보미”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,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
2.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
3.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,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아이돌보미 처우개선)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임·위탁)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「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 아이돌봄 지원법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23년 ~ 계속 추진

○ 주요내용 :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
(안 제4조 ~ 제5조)

- 아이돌봄서비스비용지원,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

2. 비용발생 요인

○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시 드는 비용

3. 관련조문 :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아이돌보미 교통비

나. 추계 결과 : **합계 48백만원 정도 (2023. 7. ~ 2023. 12. 6개월 기준)**

(1)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: 48,000,000원

○ 교통비 : 50,000원 × 6월 × 160명 = 48,000,000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 반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별첨

6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 방성영

[별 지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48,000	99,000	100,200	102,000	103,200	452,400
세외수입							
세 출		48,000	99,000	100,200	102,000	103,200	452,400
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		48,000	99,000	100,200	102,000	103,200	452,400
재원 조달		48,000	99,000	100,200	102,000	103,200	452,4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 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군비		48,000	99,000	100,200	102,000	103,200	452,4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